# 전사적자원관리(ERP) SM서비스 변경 계약서

주식회사아토(이하 "갑")와 삼성에스디에스주식회사 (이하 "을")는 "갑"이 구축하여 운영 중인 전사적자원관리(ERP)의 SM서비스 계약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을 합니다.

| 항 목   | 변경前   | 변경後                             |
|-------|---|---------------------------------|
| 서비스기간 | 2005. 5. 1 ~ 2008. 4. 30 (36개월)   | 2005. 6. 1 ~ 2008. 5. 31 (36개월) |
| 서비스료  | 400만원/월   | 좌 동                             |
| 서비스내용 | 제 4 조 (SM서비스 사항)  1)uniERP 패키지와 커스터마이징한 부분에 대한 BUG PATCH 및 운용상의 TROUBLE SHOOTING 해결  2) uniERP 패키지의 업그레이드 CD-ROM 제공, INSTALL 및 DATA CONVERSION 지원  3) uniERP 업그레이드와 관련된 매뉴얼등 자료와 사용자교육 제공  4) uniERP 세미나, 행사, 컨퍼런스, 교육관련 정보 제공  5) 정기방문 하여 시스템 점검 및 불편사항 해소(주 2회 이상)  6) uniERP 시스템이 원활히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지원  7) 조회, 발행프로그램은 무상으로 지원  8) 업무운영지원 (월차결산작업 등) | 좌 동                             |

\* 변경사유 : 프로젝트 완료 지연, 1개월 무상 SM서비스 지원

2005. 4. 22.

"갑"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263-1 시화공단2다 302 주식회사 아토 대표이사 문 상 영화된 대표

"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07-19 삼성에스디에스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67.8

## 전사적자원관리(ERP) SM서비스 계약서 ( uniERP V.2.7.X )

2004. 10. 22.

주식회사 아토 삼성에스디에스주식회사

## 전사적자원관리(ERP) SM서비스 계약서

주식회사 아토(이하 "갑"이라 한다)와 삼성에스디에스주식회사(이하 "을"이라한다)는 "갑"의 전사적자원관리(ERP) SM서비스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 < 계약내용 요약 >

- 1. 당사자
  - 1) SM서비스 용역 수령자 : 주식회사 아토
  - 2) SM서비스 용역 제공자 : 삼성에스디에스추식회사
- 2. SM서비스기간 : 2005.5.1 ~ 2008 230 (36개월)
- 3. 계약대상 (용역) : 설치된 uniERP v2.7.X 시스템 SM서비스(60 USER)
- 4. 계약금액(부가가치세 별도) : 一金 일억사천사백만원(₩144,000,000원)
- 5. 대금지급조건 : 현금지급

월말 ₩4,000,000원씩 청구하고 익월 30일까지 현금지급

위 계약에 대하여 "갑"과 "을"간에 별첨의"계약일반약관"을 계약내용으로 상호 신의에 입각하여 본 계약을 체결하고 쌍방이 서명 날인한 후 "갑"과"을"이 각각 1통 씩 보관한다.

(갑):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263-1주식회사 아토대표이사 문 상 영



(을):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7-19 삼성에스디에스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인



## 계 약 일 반 약 관

## 제 1 조 (목적)

본 계약은 "갑"의 전사적자원관리(ERP)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을"이 SM서비스 하는 용역(이하 "SM서비스 용역")에 대한 제반사항과 임무를 규정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 2 조 (용어정의)

- 1. 아래 2.항을 제외한 본 계약과 관련한 모든 용어는 전사적자원관리(ERP)의 최초 공급 계약서상의 용어를 준용 한다.
- 2. "업그레이드"는 "갑"이 현재 사용중인 전사적자원관리(ERP)을 상위 버전이나 상위 릴리즈로 갱신하는 것을 말하며 버전이나 릴리즈의 업그레이드의 경우 각각 "버전업 (V1.X->V2.X)", "릴리즈업(V1.X->V1.X)" 이라 한다.

### 제 3 조 (SM서비스 대상)

"을"이 SM서비스 할 "갑"의 시스템 uniERP V2.7.X 시스템 이다.

## 제 4 조 (SM서비스 사항)

"을"은 계약기간중 제3조 에서 정한 SM서비스 대상에 대해 다음 사항을 "갑"의 요청 시나적당한 시기에 "갑"에게 제공한다.

- 1) uniERP 패키지와 커스터마이징한 부분에 대한 BUG PATCH 및 운용상의 TROUBLE SHOOTING 해결
- 2) uniERP 패키지의 업그레이드 CD-ROM 제공, INSTALL 및 DATA CONVERSION 지원
- 3) uniERP 업그레이드와 관련된 매뉴얼등 자료와 사용자 교육 제공
- 4) uniERP 세미나, 행사, 컨퍼런스, 교육관련 정보 제공
- 5) 정기방문 하여 시스템 점검 및 불편사항 해소(주 2회 이상)
- 6) 전사적자원관리(ERP)이 원활히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지원
- 7) 업무운영지원 (월차결산작업 등)

## 제 5 조 (SM서비스 제외사항)

다음 사항은 "갑"의 요청시 "을"은 "갑"과 협의 하여 내용 산정 후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 진행한다.

1) uniERP 이외의 신규 프로그램 작성 및 모듈 관련 컨설팅 ( 연속적으로 10 M/D 이상 )

## 제 6 조 (계약 유효기간)

- 1. 본계약의 유효기간은 **2005년 5월 1일부터 2008년 4월 30일** 까지 36개월로 한다.
- 2. 기간 만료전이라도 1개월 전까지 쌍방으로부터 계약조건의 변경 요청이나 해지의 의사 표시를 쌍방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 연장하거나 해지한다.
- 3. 계약 기간 중 계약내용을 변경할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양당사자는 합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제 7 조 (SM서비스비)

제 3 조에 의해 SM서비스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갑"이 "을"에게 지급해야 될 SM서비스 비는 uniERP 운영 및 컨설팅 서비스료로 제9조 대금지급 조건으로 지급한다.

## 제 8 조 (대금지급 조건)

월말 ₩4,000,000원씩 청구하고 익월 30일까지 현금치급. 본 계약상의 지급이 지연될 경우 "응하는 이행 연체일로부터 연체일수에 대해 연 15%의 연체 이자율을 적용하여 "갑"에게 연체이지를 청구한다.

## 제 9 조 (SM서비스 수행방법)

- 1) SM서비스요청
- 가) "갑"은 전사적자원관리(ERP)의 운영중 SM서비스 사유가 발생된 경우 관련자료와 함께 자세한 내용을 SM서비스 통보서(별첨1)에 작성하여 "을"에게 통보한다.
- 나) 긴급한 보완이 필요한 경우 "갑"은 유선 또는 구두로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유지보수 통보서는 사후에 제시토록 한다.

#### 2) SM서비스

"갑"으로부터 SM서비스 요청을 받은후 "을"은 통상 8HR 이내에 SM서비스를 수행하여야 한다.

#### 3) SM서비스 완료 통보

"갑"의 SM서비스 요청사항이 완료됨과 동시에 "을"은 완료내용을 SM서비스 통보서에 작성하여 "갑"에게 통보한다.

#### 4) SM서비스 확인

"을"의 완료통보후 "갑"은 즉시 검수결과를 SM서비스 통보서에 작성하여 통보하여야하며 만약 통보가 없을 때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5) SM서비스 이력관리

"을"은 "갑"에게 제공한 SM서비스 내용을 주별, 월별로 정해진 일정에 SM서비스 내용을 보고한다.

제 10 조 (SM서비스자료의 보관)

"갑"과 "을" 쌍방은 SM서비스 요청 및 완료통보에 관련된 자료일체를 계약기간 동안 보관 하여야 한다.

제 11 조 (SM서비스 적용의 예외사항 )

"을"은 본조 이하에서 규정한 경우에 대한 SM서비스 의무가 없으며 "갑"이 합리적으로 통제 불가능한 사유로 인해서 발생한 SM서비스의 지체 및 "갑"의 귀책 사유로 인한 지체 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 1) "갑"의 요원, 대리인, 하청인 또는 방문자에 의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고장
- 2) "갑"의 정식 등록사용자 이외의 허가받지 않은 인원이 사용 함으로써 발생한 고장
- 3) H/W 의 오동작으로 발생한
- 4) 전원공급장치, 전기합선 등의 전 기의 고장으로 인한 고장
- 5) 공기 및 습도조절 등이 부적합한 환경하에서 발생한 고장
- 6)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우발 사고로써 발생한 고장
- 7) 기타 SM서비스 내역에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

#### 제 12 조 (상호협조)

- 1. "갑"과 "을"은 SM서비스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상호 제반협조를 하여야 하며, 사용 Users의 보완 요청사항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수용하고 수용 불가능 사유를 공유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한다.
- 2. 원활한 SM서비스를 위하여 "을"이 현장에서 혹은 전화를 통하여 지원서비스를 제 공하는 동안 "갑"은 반드시 한명의 위임자를 작업현장에 배석시켜야 한다.
- 3. "을"은 "갑"의 시스템 전담자(위임자)의 전사적자원관리(ERP)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교육한다.

## 제 13 조 (교육지원 범위)

1. 업그레이드나 프로그램 수정 등으로 시스템의 운영방법이 변경된 경우 "을"은 운영자 교육을 실시하며 교육일정과 범위는 "갑"과 "을"의 합의에 의하여 실시하며 "갑"은 교육에 성실히 참여한다.

2. "을"이 공급한 소프트웨어와 무관한 교육은 "갑"의 자체비용에 의해 실시하며 "을"은 이와 관련한 교육내용 및 일정에 따른 자문 역할을 성실히 수행한다.

## 제 14 조 (책임범위의 제한)

"을"은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본 계약서에 명시된 책임 이외의 직.간접 손해에 대한 책임이 없으며 손해배상의 범위는 "갑"이 "을"에게 지급한 대가를 초과하지 않는다.

### 제 15 조 (계약의 해제, 해지)

- 1. 각 당사자는 30일간의 시정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서면 통보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내에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2. 계약 당사자 중 일방에게 다음의 경우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전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상대방은 즉시 해제할 수 있다.
  - 1) 주요재산의 양도, 압류, 가압류
  - 2) 계약 당사자 일방이 발행, 배서한 유가증권의 부도
  - 3) 계약 당사자 일방의 회사정과 전체, 파산, 화의절차, 법정관리 등의 신청
  - 4) 기타 그 신용에 중대한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 16 조 (계약의 효력)

- 1. 본 계약은 "갑"과 "을"의 서명이 완료된 날부터 유효하며 어떠한 사항도 "갑"과 "을"의 서명 없이는 수정, 변경될 수 없다.
- 2. 본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의 경우에도 계약 중에 발생된 채권, 채무는 계속 유효하다.
- 3. 본 계약 제16조에 따라 본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을"에게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갑"은 이를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제 17 조 (일반사항)

- 1. 일방은 타방의 사전 서면 동의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양도하지 못한다.
- 2. 양 당사자는 본 계약체결 및 이행으로 지득한 타방의 업무상 비밀을 타방의 사전 서면 동의없이 제 3 자에게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 3. 본 계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상호간에 합의가 없는 사항은 일반적인 상관례에 준한다.
- 4. 본 계약의 합의 관할 법원은 "갑"의 본점 소재지 관할의 지방법원으로 한다.

## 제 18 조 (특약사항)

본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본 계약의 각 조항과 다른 사항을 특약할 경우 "갑"과 "을"이 서면으로 합의 함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한다.

본 계약은 "갑"과 "을" 쌍방이 서명 날인한 날로부터 유효하며 본 계약이 체결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갑"과 "을" 각각 1부씩 보관 한다.

2004. 10. 22.



## SM서비스 요청/통보서

|           | 0            | テレエレ     |               |         |       |     |    |     |      |    |     |
|-----------|--------------|----------|---------------|---------|-------|-----|----|-----|------|----|-----|
| 요청사 :     |              | 청자<br>락처 |               | 요청일     | 시 :   |     | 년  | 월   | 일    | ٨I | 분   |
| 요청내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 컨니티어    |              |          | ~             |         |       |     |    |     |      |    |     |
| 조치내역      |              |          |               |         |       |     |    |     |      |    |     |
|           |              |          |               | 6.20    | 11400 |     |    |     |      |    |     |
|           |              |          |               | V VIS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      |    |     |
| 조치자 :     | 4 L 4 A A L  |          |               |         |       |     |    |     |      |    |     |
|           | <u> 삼성에스</u> | 느니에      | <u>스</u> 주식회사 |         |       |     |    | _ 인 |      |    |     |
| 기타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차완료 통보 : | 1=           | 의        | 01            | 71.4.61 |       |     |    | 100 |      |    | 40- |
|           |              | 월        | 일             | 검수일 :   | 년     | 월   | 일, | 검식  | :    |    | -   |
| 2차완료 통보 : | 년<br>        | 월        | 일             | 검수일 :   | 년     | 월   | 일, | 검수  | :    |    |     |
| 3차완료 통보 : | 년            | 월        | 일             | 검수일 :   | 년     | 월   | 일, | 검수  | -자 : |    |     |
| 종료 :      | 년            | 월        | 일             |         |       | 시하셔 |    |     |      | 01 |     |